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신뢰사회의 기본입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 Too occord

#### 0. 교육 전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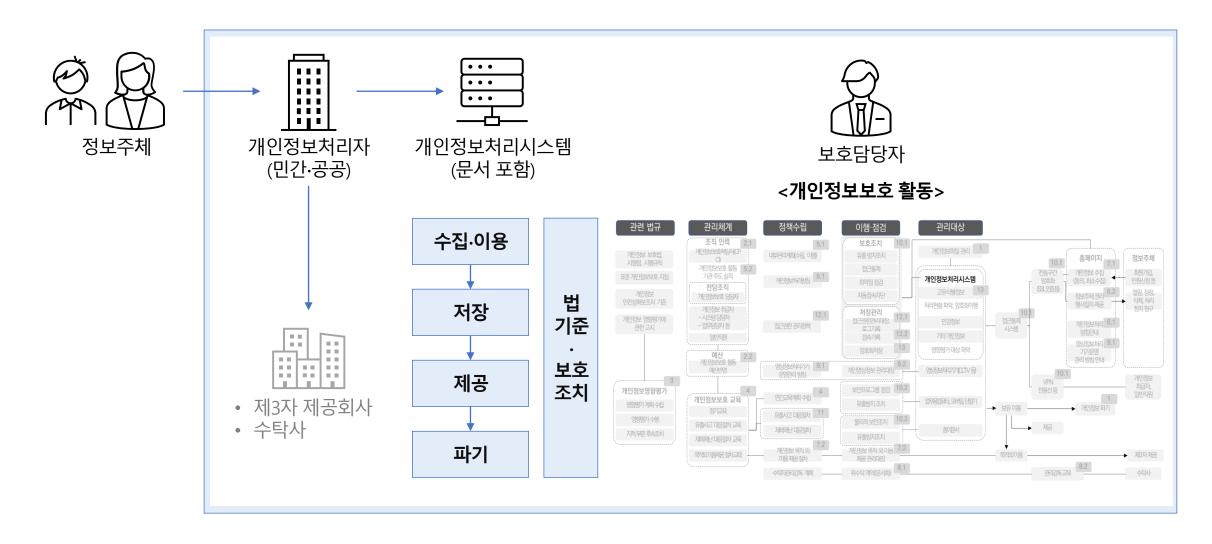
#### 교육 방향 및 교재 구성

- 1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교재 편성(교육 시 다루지 않는 조항은 붙임자료로 제공)
- 2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기준으로 구성하되, 일부 순서를 변경
- 3 원칙적인 사항과 사례는 교재로 포함되나 주관적일 수 있는 의견 또는 경험에 관한 사항은 교육시에만 공개
- 4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운영자에게 전달
- 5 교육생 개별의 녹음과 녹화는 금지(Please!!!)

# 1000000

#### 0. 교육 전 참고사항

#### ☞ 개인정보, 이해관계자, 개인정보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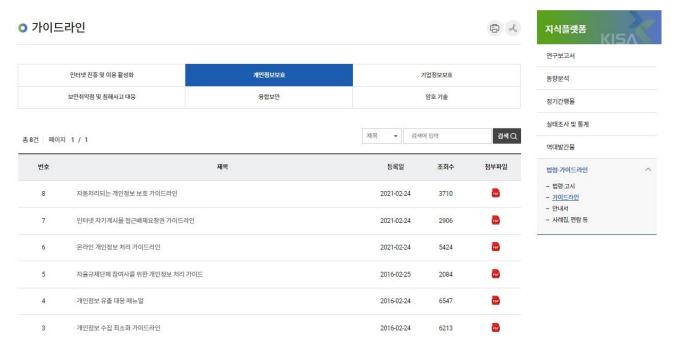


#### 0. 교육 전 참고사항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KISA 지식플랫폼,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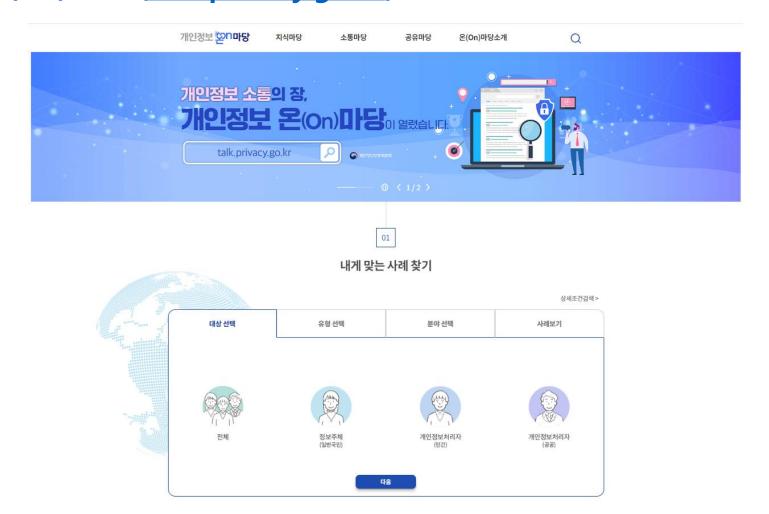


자료 : KISA 지식플랫폼(https://www.kisa.or.kr/20601)

0. 교육 전 참고사항



☞ 개인정보 온(On) 마당(<u>talk.privacy.go.kr</u>)



# Contents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 3 개인정보의 처리 주요 내용
- 붙임1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 **붙임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1

# 개인정보의 의미와 개인보호 보호법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개인정보란? (제2조)

#### <그 자체의 식별 가능성>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가 지칭하는 대상>

-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
-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Ex. 외국인, 피의자 정보)

#### <타 정보의 결합을 통한식별 가능성>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함

#### <정보가 지칭하는 대상>

-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없음
- 단, 연관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Ex.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정보를 통한 식별 가능성>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 (c.f.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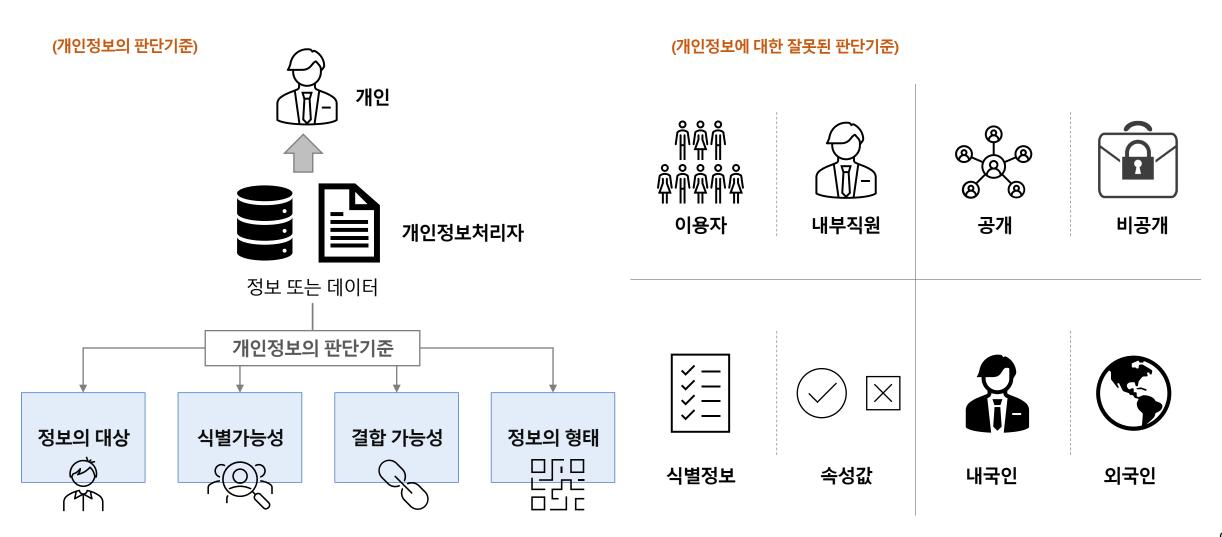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음

#### <정보의 형태>

- 전자, 수기 등 형태와 처리방식은 무관
- 주관적 평가, 허위정보라도 해당될 수 있음 (Ex. 평가표, 예명)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개인정보에 관한 잘못된 판단기준 예



# 1000000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개인정보의 예시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나치저 저 ㅂ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사회적 정보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정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 0 000000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퀴즈) 개인정보 여부

No	상황	개인정보 여부
1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추가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가?	Yes or No
2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개인정보인가?	Yes or No
3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Yes or No
4	방호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방호직 특성상 근무중 순찰을 실시하는데 관리자가 공개적인 게시판에 순찰 보고서라는 항목으로 해당 근무자의 성명, 순찰포인트, 누락여부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인가요?	Yes or No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구성

####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1장)

- 개인정보의 정의
-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 정보주체의 권리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4장)

- 안전조치 의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 보호책임자 지정, 처리방침 공개
- 유출 시 조치 해야 할 사항- 통지 및 신고, 대책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2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무
- ▶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 자료제출요구
- ▶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특례(6장)

- ▶ 수집.이용, 파기 등 특례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 손해배상의 보장
- > 국내대리인 지정

#### 개인정보의 처리(3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파기
- ▶ 개인정보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가명처리의 특례

#### 권리 보장 및 구제(5·7·8장)

-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손해배상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
  - 조정의 신청, 절차 등
-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절차 등

# 1000000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

-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 **7** 가명/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가명/익명으로 처리
- **1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mark>열람을 요구할 권리(사본</mark> 발급 포함)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1000000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 ☞ 타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
    - ▼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
    - ▼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 등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
      - ※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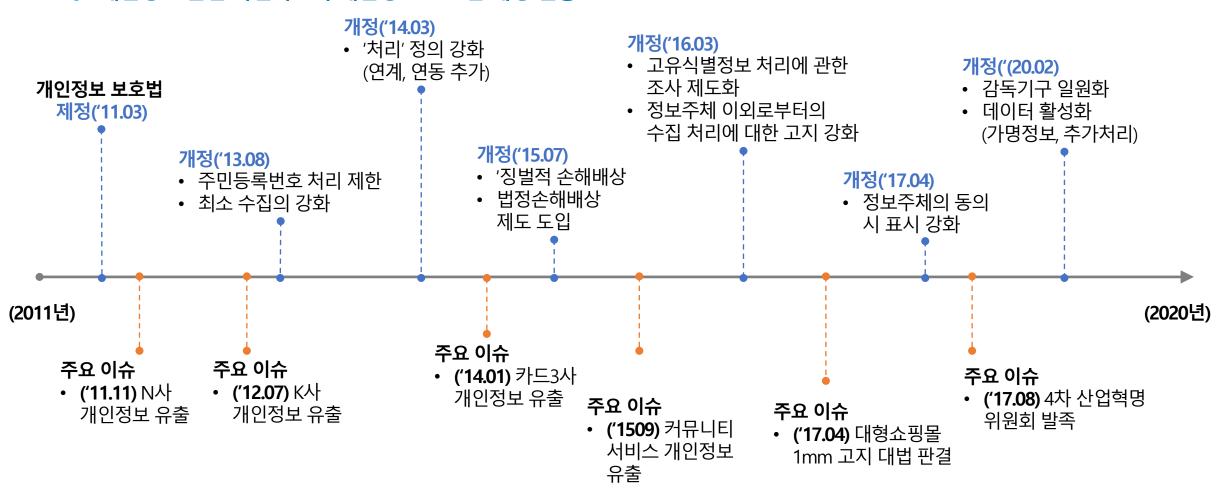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2020. 8. 5. 시행)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 연혁
  -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현황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사항

1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2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 양립성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u>3</u>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0 000000

- ☞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효율화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보호위원회로 통합·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각부처의개인정보보호 업무통합 안전한데이터 활용을 위한 감독체계 구축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 ☞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 2 정보통신망법과의 통합을 통한 법령 일원화
    -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적용 관계 등 혼란 야기
    -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업하는 경우 두 법 모두 적용되는 등 **유사 중복규제 논란 제기**
    -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고유한 규정은 보호법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관

#### · 흡수·통합

- 동의 받는 방법
- 민감 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영업의 양도·양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인증
- 열람·정정·삭제 요구
- 손해배상
- 법정 손해배상
- 금지 행위
  - 고발

#### 🔼 기존 규정 개정

- 개인정보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 특례 이관

- 수집 이용
- 노출 개인정보 삭제.차단
- 유출통지 및 신고
- 국내대리인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국외이전
- 동의철회

- 상호주의
- 이용내역통지
- 과징금
- 손해배상 보험
- 방송사업자 준용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1000000

-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1** 데이터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 제15조, 제17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최초 수집 시 정해진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이용 가능

목적 일부 변경 시 정보주체로부터 추가 동의 획득 필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제공 가능

# 가<mark>명정보</mark>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

제18조제2항제4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제28조의2제1항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개인정보

>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산학 연구 및 민간연구 등의 **포함 여부 불명확**

추가 정보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新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와 상업 목적의 통계 작성 포함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2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 ▼ **개인정보 판단기준 보완:**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체화
    -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명확화
      - ※ 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 기 존

#### 제2조(정의) 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정

#### 제2조(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의 활용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예) 홍길동, 32살, 남성,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010-1234-5678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 홍xx, 32살, 남성, 서울시, 마포구, 010-xxxx-xxxx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 서울 사는 30대 남성

#### ▼ 가명정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2조)* 

#### ▼ 가명정보의 처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 ♥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가명정보의 활용
  - **3** 데이터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28조의3)

데이터 결합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부재



####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 ▼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제28조의2)하도록 하되,
- ▼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제28조의3 제1항) ※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 가명 또는 익명 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가능(제28조의3 제2항)

#### [결합전문기관(반출심사위원회)의 결합정보반출승인기준(영제29조의3제4항)]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고시) 참조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1000000

- ♥ 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가처리
  -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근거 마련(제15조3항, 제17조4항)
    - ✓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영 제14조의2제1항)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 추가적 이용 제공의 판단기준 공개 및 점검(영 제14조의2제2항)
      -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
      - 판단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 점검



####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추가처리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추가 처리의 의미

#### ▼ 추가처리(Futher Processing)의 의미

■ 최초 수집시의 목적을 위한 적을 위한 처리인지 그 이후 새롭게 정의된 목적을 위한 처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수집 활동 이외의 모든 처리 활동을 통틀어 추가 처리라고 함

(GDPR에서 양립성 평가의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국내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창범, 20년 4월)

#### (EU 사례) 추가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례와 잘못된 사례

- LP음반을 판매하는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LP음반의 카탈로그를 보내오다가, 오디오테이프, CD, DWD 형태의 음악 카탈로그도 보내는 경우
- 약국에서 다른 고객의 의약품을 잘못 가져간 경우, 약국이 고객에게 위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처방 병원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전화하는 경우

- 이전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해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XX서점은 영업의 특성상 제휴업체가 빈번히 변경된다는 이유로 회원가입 신청서 상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휴업체명) 및 개인정보의 제공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여러 제휴업체와 제공·공유함



# 개인정보의 처리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처리단계와 법령



수집·이용(15조, 39조의3)

최소 수집(16조)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22조)

제3자 제공(17조)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18조)

처리위탁(26조)

안전조치 의무(29조)

처리방침(30조) 보호책임자(31조)

파기(21조, 39조의6)

- 처리제한 -민감정보(23조) 고유식별정보(24조) 주민등록번호(24조의 2)

국외이전(17조, 39조의12)

영업양도·양수(27조) (민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34조, 39조의4) 개인정보파일 등록 (32조)(공공기관)

이용내역통지 (제39조의8)

손해배상보장 (제39조의9)

차단, 삭제 (제39조의10) 국내대리인 지정 (제39조의11)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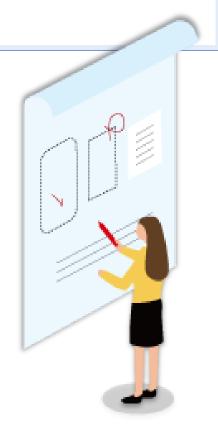


위반 시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처리 근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도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 거부 가능
  -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개인정보의 처리

- ☞ 동의 받는 방법(제22조)
  - ▶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 ▼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시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 3. 개인정보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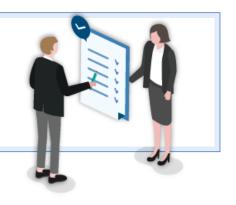
#### ☞ 동의 받는 방법(제22조)

- 동의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 개인정보 중 다음의 사항
    -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표시방법(전자문서와 서면동의 시)

-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할 것



#### 3. 개인정보의 처리

#### ☞ 동의 획득 시 참고사항

- ▶ 유효한 동의요소(EU 동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고사항)
  - ▼ Freely Given(자유롭게 주어진)
    - 정보주체가 동의의 강요를 느끼거나,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동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한 동의가 아님
    -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고용주 등-동의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됨
    - 다른 약관이나 조건과 함께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항과 함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 ▼ Specific(구체적인)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동의를 받을 때 처리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Informed(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 정보주체에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제3자 제공을 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와 제공항목을 추가로 알려야 함
  - ▼ Unambiguous indication of wishes(모호하지 않은 의사표현)
    - 정보주체가 동의의 표현을 명확히 한 경우에만 유효한 동의에 해당함
    - 컨트롤러가 구체적인 동의 방법은 자율적으로 개발 적용 가능
    -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전에 받아야 함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시 점검사항

▶ 작성 전 확인사항

No.	확인사항	고려사항
1	업무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동의 필요 여부의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확인	제3자 제공 여부, 동의 필요 여부 확인 필요
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여부 확인	위탁사실, 위탁내용, 수탁자 등의 처리방침 게시 연계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확인	동의받은 사항의 변경, 별도 동의 필요 여부 확인
7	동의 거부 시 불이익 확인	불이익 범위 여부의 확인

#### > 동의 후 조치사항

No.	확인사항	고려사항	
1	동의 의사 확인	동의받은 사실의 입증	
2	동의 입증		
3	필수 선택항목의 구분	특례조항	

#### 자동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동의 필요 예

- ▼ 자동수집장치에 의해 수집하는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선택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동의 필요
- ▼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행태정보를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 잘못된 사례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가 미흡한 잘못된 사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수집 항목
  - 회원가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 성별, 아이디, 중복확인정보, 생년월일,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② 서비스 이용정보
    - 사용자 이용 편의서비스 제공, 이용정보 분석, 사이버 공격을 대비한 자료 취득: 접속 IP, 이용한 콘텐츠 로그, 쿠키
  - 2.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 탈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음

※ 고객님께서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불이익의 사항이 맞춤형인지 회원제 서비스의 이용제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향후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민감정보를 수집한 잘못된 사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회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정보와 분석 및 고객의 관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이벤트 기획 및 개인별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수집 항목:설치한 어플리케이션 관련 정보(APP패키지명, 버전,설치경로,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환경(단말기 모델명, OS, 통신사) 정보, 기기관리 번호

\*위 정보 충에서, 이용자가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1) 사상, 신념 (2)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및 탈퇴 (3) 정치적 견해 (4)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5)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3.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
- 민감정보 수집 시에는 다른 정보와 별도로 동의 필요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합가 있으며, 거부 시 상품 홍보 및 이벤트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선택) 중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의 수집 필요성이 불분명하면서 수집 가능성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 됨

※ 수집목적의 명확화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 잘못된 사례

▶ 마케팅 목적의 불분명한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안내 메일 발송 , 회원에게 제공하는 뉴스 전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내 메일 및 뉴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수집 목적 불분명)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안내 메일 발송
- → (수정 예시) 구매물품 관련 신상품 개발 홍보

※ 불이익의 사항이 맞춤형인지 회원제 서비스의 이용제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동의없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의 사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쿠키 사용목적)

- 개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제공
- 접속빈도 또는 방문시간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타겟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의 척도로 활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누락)

- 1. 수집목적 : 신규서비스 /상품 안내 → 개인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 2. 수집항목:휴대폰번호/이메일 → 쿠키에 의한 자동수집 정보

처리방침 상 쿠키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자동수집되는 개인정보도 계약이행과 무관할 경우, 선택정보로 동의 필요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내 제3자 제공(제17조)
  -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2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개인정보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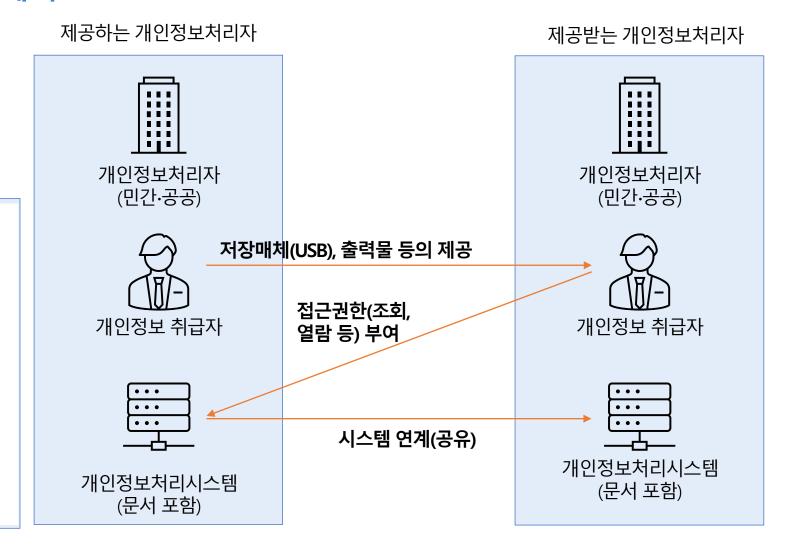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 예시

제3자 제공의 정의와 예시



#### ▼ 개인정보 제공의 정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표준지침 제7조 제1항)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

#### ▶ 사례

#### ▼ 법률의 특별한 규정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에 이용하도록 제공

#### ▼ 법령상 의무 준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강사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 의무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소득지급자의 소득 귀속자의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등 이행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사무 「주민등록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사무

# 7 7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

수집이용 기준과 제공기준의 비교(제15조, 제17조)

기준	수집이용(제15조)	(목적 내) 제3자 제공(17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	제공가능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능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능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가능	제공 불가(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 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가능	제공 불가(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3. 개인정보의 처리

- -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 목적 외 이용·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아래 사항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만 해당]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 6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개인정보의 처리



## 

#### ▶ 사례

####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사례

- ■『소득세법』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 질문
- 『감사원법』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관계자 등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7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록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에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이 병역 이행 사항 확인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

## 3. 개인정보의 처리

## 

#### 목적외 이용의 잘못된 예

- ▼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 자료를 발송한 경우
- ▼ 조세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사람에 관한 납세정보를 조회하여 소송에 이용한 경우
-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의 별도 상품서비스 홍보에 이용
-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광고에 이용

#### ▶ 목적외 제3자 제공의 잘못된 예

- ✓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홍보 마케팅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설학습지 회사에 제공
- ▼ 홈쇼핑 회사가 주문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 콘도미니엄사에 제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 9 9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심의·의결 사례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례(공공기관만 해당)

-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선명, 출·입도지, 승선일) 제공받을 수 있음
- 강원도 삼척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른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만65세 이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 이용 가능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pipc.go.kr))



## 3. 개인정보의 처리

## ♥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따른 이행사항

###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외 필요사항에 대한 제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청



요청

####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 공공기관 이행사항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관련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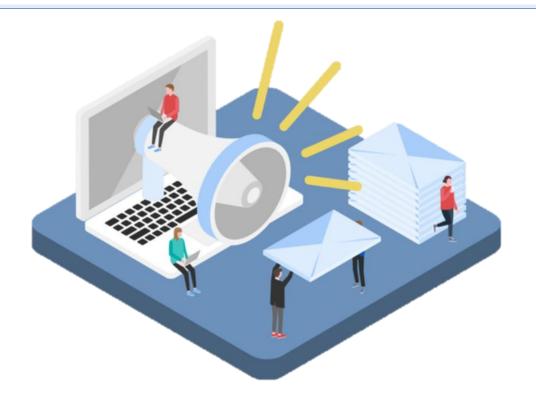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제20조)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3일 이내)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제20조)
  -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단,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연락처 등)가 없다면 적용 제외 가능
      - ▼ 고지의무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 ▼ 고지 방법 및 시기
        -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를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 ▼ 고지하였다는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을 개인정보 파기할 때까지 보관 관리
  - ▶ 단, 범죄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감호 집행, 교정·보호·보안관찰 처분, 출입국 관리사항 등의 개인정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시에는 적용 예외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가명정보의 처리특례(제28조의 2)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

-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인 정보를 통계작성의 목적은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가능함
- ▼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

####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미포함

-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결합 가능한 개인정보의 목록 확인
- ▼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게 있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가명정보의 처리특례(제28조의 2)

#### ■ 통계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예시

- ▼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에서 주간, 월간 단위로 판매상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상품에 대한 지역별 통계(품번, 품명, 재고, 판매수량, 금액)를 작성하고자 하려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월별 시간대별 차량 평균속도, 상습 정체구간, 사고구간 및 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려는 경우

####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예시

- ▼ A지자체에서 특정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유사 관광지 주변의 상권과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관광지 주변 상권에 대한 지원 및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스팸정보와 민간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팸정보를 가명정보 결합하여 보다 더 많은 스팸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스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 유형, 날짜, 내용, 신고건수 등의 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결합에 참여한 스팸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경우

#### 3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처리 예시

▼ 연구소가 코로나19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공익적 연구가치가 있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록보존하고자 하려는 경우

# 0 0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가명정보의 처리특례(제28조의 2)
  - 가명정보의 처리 단계



#### <Point>

- ✓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가명처리 대상의 선정
- ✓ 처리목적 적합성 검토
- ✓ 안전조치 이행
- ✓ 필요 문서 작성
- ✓ 가명처리 시 내부 승인 절차

#### <Point>

- ✓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
- ✓ 위험성 검토(데이터 자체 식별, 처리환경 식별)
- ✓ 식별위험성 검토 보고서

#### <Point>

- ✓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 설정
- ✓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 기반의 가명처리 수행
-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가정보의 원칙적 파기 또는 필요시 가명정보와 분리 보관

#### <Point>

- ✓ 1~3단계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 검토
- ✓ 단계별 적정성 검토
- ✓ 적정성 검토위원의 의견 검토 및 최종검토 결과 제출

#### <Point>

- ✓ 적정성 검토 이후 생성된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시행
- ✓ 가명정보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가명처리 예시

가명처리와 위험성 검토

	선정		<b>\</b>		선	정					선정		
소유자 명	연락처	주택 구분	법정 동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건물명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김철수	010- 1234- 5678	아파트	2647525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대우마 리나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10- 1234- 9876	오피스 텔	578951	대전시	서구	둔산동	656	푸르지 오시티	81,250	-	_	56.65	24.32

	별정.	H / A	ᆡᄖ	TL.
- 47	⊒്∂.	모(~	77	$^{\Gamma}$

식별가능정보(준식별자)

라운딩

소유자명	연락처	주택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김철수	010- 1234- 5678	아파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_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10- 1234- 9876	오피스 텔	대전시	서구	둔산동	656	81,250	_	_	56.65	24.32

의험성 검토사항

#### 〈데이터 자체 위험성 검토사항〉

- ⊘ 소유자명,연락처:개인정보로간주해암호화조치
- 구체적인지번은분석목적과무관해삭제조치
- ⊙ 시세정보:분석에필요한단위(만원)로기명처리

#### 〈처리환경 위험성 검토사항〉

- ☑ A사의부동산시세정보를B기관에제공(계약)
- 제공되는항목의지번의경우등기부열람을통해특정개인식별기능성존재

ID	연락처	주택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Skad2is wefjh	010- 1234- 5678	아파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_	25,000	800	104,00	84.00
dsi545sd kfjd	010- 1234- 9876	오피스텔	대전시	서구	둔산동	81,300	_	-	56.65	24.32

삭제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가명정보의 처리특례(제28조의 2)

- ▶ 잘못된 가명정보의 이용
- ▼ 잘못된 가명정보의 내부 이용 사례(동일 부서)
- (상황) 동일 부서 내 이용으로 ○○화장품 회사의 A팀은 화장품
   판매정보를 관리하는 팀으로서,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신상품
   수요조사 예측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활용
- (처리현황) A팀은 판매정보 내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이름, 성별, 승인번호를 가명처리하고, 희귀 지역의 판매내역을 삭제하여 A팀 가명정보 분석담당자에게 제공
- (문제점) 가명정보 분석담당자는 가명정보 분석을 통해 최고가 화장품의 금액과 판매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판매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여 금액과 지역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 잘못된 가명정보의 내부 이용 사례(타 부서 이용)
- (상황) 타 부서 이용으로 □□공사는 A부서의 고속도로 이용차량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관리하는 B부서에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제공(이 때B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고려하지 않음)
- (처리현황) A부서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차량번호, 차종 등을 가명처리하고, 톨게이트 입출시간, 이동량, 사고정보 등의 정보를 B부서에 제공
- (문제점) B부서는 A부서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이동시간 정보와 B부서가 보유한 톨게이트 입출시간을 활용하여 특정시간에 통과한 차량의 번호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차량번호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가명정보의 적용범위(제28조의7)

가명정보의 적용 예외 조함

#### ▼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 가능
  - 개인정보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파기방법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
  - 보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파기절차

- 개인정보처리자
  -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제39조의6, 특례조항)
  - 장기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별도 보관
    - ▼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 ▼ 1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다른 이용자 정보와 별도 분리 보관
    - ▼ 보관기간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 파기 또는 별도 보관의 통지 :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 통지
    - ▼ 파기시 : 파기 사실, 기간 만료일, 파기되는 개인정보 항목
    - ▼ 분리 보관시 : 분리 보관 사실, 기간 만료일, 분리 보관되는 개인정보 항목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파기 시 고려사항

#### ▶ 파기 대상

▼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 및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접속로그(log), 쿠키(cookie), 결제기록 등 서비스 이용과정의 생성 정보도 파기 대상이 됨

▼ 단, 결제내역 등 분리보관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분리 보관 후 필요한 보존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 유효기간의 변경

✓ 약관으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경우는 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의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기간을 요청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 광고성 정보전송 동의와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관리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는 최초에 수신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신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자 함에 있다

# 10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개인정보 파기 시 고려사항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법령	보존의무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ul> <li>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li> <li>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li> <li>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li> <li>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li> </ul>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ul> <li>법 제2조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 12개월</li> <li>위 자료 중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통신사실확인자료 : 6개월</li> <li>법 제2조제11호 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li> </ul>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ul> <li>환자명부: 5년</li> <li>진료기록부: 10년</li> <li>처방전: 2년</li> <li>수술기록: 10년</li> <li>검사소견기록: 5년</li> <li>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li> <li>간호기록부: 5년</li> <li>조산기록부: 5년</li> <li>진단서 등의 부분(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li> </ul>



3. 개인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3조, 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생체정보, 인종 및 민족 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으로 처리근거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함(제24조2)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생체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 ▼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 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함
  - ▼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의미함
    - 생체정보는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개인에 관한 특징 (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처리되는 일반적인 생체정보(로 구성
  - ▼ 생체인식정보와 일반적인 생체정보의 구분 예시

구분	얼굴 사진(영상)의 경우	음성의 경우	민간정보 여부
생체인식정보	얼굴 사진(영상)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 목적으로 출입통제 시스템 등에 사용하는 경우	AI스피커에서 입력된 사람의 음성을 통해 특 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말하는 사람 이 누구인지 확인해 응답하는 경우	0
일반적인 생체정보	얼굴 사진(영상)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지만 성별, 감정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 해 사용되는 경우	AI스피커에서 입려된 사람의 음성을 통해 특 징점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지만 단순히 화장 의 감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X

# 10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생체정보의 처리
  - ▶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과 동의 예시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동의여부
얼굴정보	[필수*] 이용자 식별 및 본인 인증	∘ 특징정보 생성 시 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원본정보)	[선택*] 얼굴 인식 알고리즘 연구 • 수집일로부터 1년 □ 동의한함 □ 동의한함 □ 동의한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얼굴정보를 이용한 로그인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얼굴정보를 이용?		
그러나 필수 항목	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얼굴정보를 이용?		동의여부
그러나 필수 항목 민 <b>감정보(특징정보</b>	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얼굴정보를 이용한다. (1) 처리 동의	한 로그인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 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 (예) I-PIN, 휴대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금지 (위반 시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 또는 보호하는 시설에는 적용 제외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있도록 안내판 설치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쟁점

#### <공개된 장소>

- ▼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의미함 (법 제25조 적용)
- ▼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테마파크)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비공개된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 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6호 적용)

#### (추가 고려사항)

비공개 장소임에도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현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안내판 등설치의무 준수가 바람직함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의무 법령 현황(예시)

관련 법령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아동복지법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가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기관은 실험실 및 보관시설의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해야 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중앙방재실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추어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 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제26조)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문서화
    - ▼ 문서에 포함될 내용
      - ①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④ 재위탁 제한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의 감독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홍보나 판매 권유 업무 위탁 시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 교육, 감독
-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1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업무위탁 사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탁사와 수탁사 관계 예시

No	위탁사	수탁사
1	고객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가)기업	(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고객 리스트를 제공받은 A컨설팅 회사
2	기업 공식 SNS의 활성화를 위해 D마케팅업체와 계약한 (나) 기업	(나)기업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친구 맺기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B 마케팅 업체
3	등록금을 은행을 통해 대리 수납하는 (다)대학	(다) 대학으로부터 재학생 정보를 받아 등록금 납무 서비스를 운영하는 C 은행
4	회사 내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리조트와 계약을 맺은 (라) 기업	(라)기업으로부터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받아 객실 예약을 하는 D 리조트
5	전국에 약 1,000여개의 가명점을 가지고 배달음식을 파는 (마)본사	(마)본사의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배말주문을 처리하는 E가맹점
6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업무일부는 N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바) 공공기관	협약에 따라 (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처리하는 F 공공기관

# 0 000000

## 3. 개인정보의 처리

## ♥ 위·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업무위탁 단계별 점검사항 예시(개인정보 처리위수탁 안내서 참조)

단계	점검사항	대상	단계	점검사항	대상
	<ul> <li>위탁자는 위탁할 업무의 개인정보 위험성을 확인 하였는가?</li> </ul>	• 위탁자		• 위탁자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는가?	• 위탁자
	•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확인하 였는가?	TIAM	•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안전한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는가?	• 위탁자	
	<ul> <li>위탁자는 위탁하여 처리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와 사전 협의 하였는가?</li> </ul>	• 위탁자	수행 중	• 수탁자는 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가?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백신 등)	• 수탁자
계약 전	• 위-수탁자는 다음 6가지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였는가?			• 위탁자는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였는가?	• 위탁자
	<ul> <li>만약 위·수탁 업무 종료 후에도 수탁자가 개인정보 를 보관하는 등 추가처리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 면 미리 위·수탁 문서에 이를 포함 하였는가?</li> </ul>	• 위탁자 • 수탁자		•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파기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였는가?	<ul><li>위탁자</li><li>수탁자</li></ul>
	<ul> <li>만약 법령상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위·수탁 문서 내에 법률상 근거와 개인정보</li> </ul>		업무 종료 후	• 수탁자는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였는가	• 수탁자
	보관 기간·목적 등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확인하였는가?	• 위탁자

# 붙임자료





#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 5.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 ☞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가능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열람 등 요구도 가능

> 정보주체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 ①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의 행사 방법과 절차 간소화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대표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

## 5.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 ☞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을 통한 열람요구 처리 필요



▶ 기간 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 가능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제한·거절 가능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5.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가능
    - ※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사실 통지 의무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 5.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37조)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가능
    - ※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인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사실 통지 의무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 5.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 ☞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현황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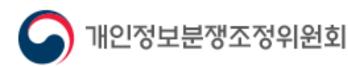
### PRIVACY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0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함께합니다. 정보통신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봉이 되고자 다양함 언무를 스해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권고
- 행정처분 의뢰
- 수사 의뢰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 개인정보분쟁조정



- 제도개선권고
- 손해배상 권고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1000000

### 5.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 ◐ 손해배상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39조)와 법정 손해배상제도(제39조의2)

구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요건	✓ 처리자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	✓ 처리자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입증 책임	<ul><li>✓ 처리자가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li><li>✓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li></ul>	<ul><li>✓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li><li>✓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li></ul>
구제 범위	✓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 사실상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배상 규모	✓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	✓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적용 시기	2016년 7월 25일 이후 유출사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정보통신망법 제2조)
  - ▶ 적용 서비스
    - ▼ 정보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 의무주체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정보통신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 제39조의4)

#### 보호주체

-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9조의3)

### (원칙)이용자의 동의

- 동의를 받을 때 고지사항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예외) 동의 없는 수집·이용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단,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제39조의3)
  -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가능
  - ▼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000000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제39조의3)
  -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 ▼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법정대리인 : 친권자(부모) 및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영 제48조의3)
    - ▼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의 표시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의 표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의 표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
    - ▼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 ▼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등

※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 가능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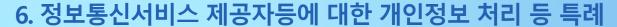
- ☞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제39조의3)
  -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방법
    - ▼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3. 개인정보의 처리

- ☞ 14세 미만 아동임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예시
    - ▼ 「청소년보호법」제16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청소년보호법」제26조 : 인터넷게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의 제공하는 경우
    - ▼ 「청소년보호법」제29조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만을 「사술」로 인정하고 사술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 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확인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유출 등을 안 때부터 24시간 내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
- 통지사항
  - ①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②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⑤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통지면제
- 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통지 대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③ 정당한 사유를 지체없이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

###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유출 등을 안 때부터 24시간 내 KISA 신고

※ 신고: 전화(118), 이메일주소(privacydean@kisa.orkr), 인터넷 사이트(www.pirvacygo.kr)

• 신고사항: 통지사항과 동일

### 통지·신고의 지연 및 보완

■ 24시간 내 통지·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또는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나머지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

### 위반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지/신고 의무 위반,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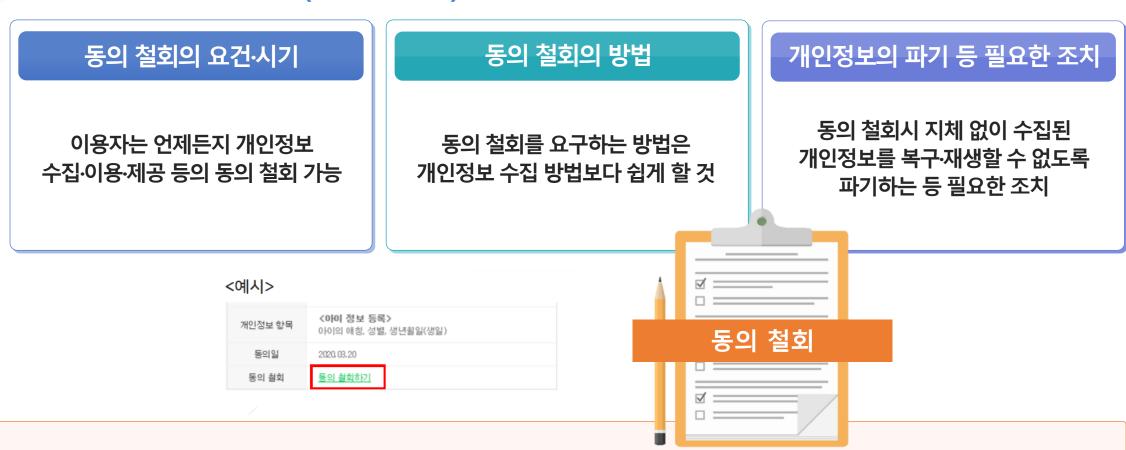
-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제39조의6)
  - 장기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별도 보관
    - ▼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 ▼ 1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다른 이용자 정보와 별도 분리 보관
    - ▼ 보관기간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 파기 또는 별도 보관의 통지 :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 통지
    - ▼ 파기시:파기 사실,기간 만료일,파기되는 개인정보 항목
    - ▼ 분리 보관시 : 분리 보관 사실, 기간 만료일, 분리 보관되는 개인정보 항목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이용자의 동의 철회권(제39조의7)



동의 철회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39조의8)
  - ▶ 통지 대상
    - ▼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 ▶ 통지 의무 적용대상
  - ▼ 직전 사업연도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 ▼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통신비밀보호법」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정보 제외
-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면제
  - ▼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내역 미통지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손해배상의 보장(제39조의9)

### 손해배상책임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의무

- 개인정보침해 관련 손해배상, 징벌손해배상(3배 배상), 법정손해배상 보장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가능

###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 보험, 공제 등의 가입 간주

■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 보험, 공제 등의 가입 기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의 최저가입금액은 별도 규정

보험 등 미가입시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노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제39조의10)

개인정보 노출방지 의무 방지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된 경우

의무주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방지대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 의무 삭제 등의 요청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치 내용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39조의11)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39조의11)

### 국내대리인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유출 통지·신고
- 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 국내대리인의 자격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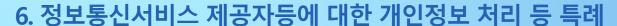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국내대리인의 성명
- 국내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국내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

 국내대리인의 위반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행위로 간주

국내대리인 미지정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39조의12)

####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 체결 금지

####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면제

국외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 사실을 개별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국외 재이전 제한

 국외 이전을 받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 시 동일 요건 적용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 국외 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시
- 국외 이전 동의시 고지시항
  -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②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③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
- ④ 이전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

###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국외이전에 대한 상호주의(제39조의13)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 가능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국외이전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고 국외 처리위탁·보관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1000000

###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 과징금의 부과(제39조의15)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국외에 제공한 경우
  - 과징금 부과시 고려 사항
    -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감사합니다

